

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5. 7. 17.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어르신장애인과장)
- 제출일자: 2025. 7. 4.(금)
- 회부일자: 2025. 7. 4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5. 7. 17.)

2. 제안이유

-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월배장애인 재활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. 12. 31.로 만료됨에 따라,
-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.

3. 주요내용

가. 대상시설

시설명	소재지	규모	現 위탁현황		비고 (개관일)
			위탁기간	수탁기관	
월배장애인 재활복지센터	갈밭남로 71(도원동) 달서구장애인복지센터 (※ 지상4층 중 일부)	867.19㎡ (지상·2층)	2023. 1. 1. ~ 2025. 12. 31	(사)한국지체 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(정운철)	1998. 8. 13

나. 위탁사무 내용

○ 위탁사무의 내용

-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시설 유지·관리 및 운영 전반
- 장애인 자활·자립을 위한 근로에 관한 사업
- 장애인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○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6. 1. 1. ~ 2028. 12. 31)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·선정

4. 관련근거

○ 관계법령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서 제7조까지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동의안은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통해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가 지역 장애인들의 다양하고 민감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야 하고,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과
-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상담·복지지원 사업, 자활·자립을 위한 근로사업, 교육·홍보 등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재활작업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할 때
-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,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수탁자선정방식 등이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,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